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명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507

발의연월일: 2021. 7. 14.

발 의 자:조명희·강대식·권명호

권영세・金炳旭・김선교

김승수 · 김용판 · 김철민

박대수 · 박대출 · 박덕흠

배현진 · 서병수 · 서일준

서정숙 · 신원식 · 엄태영

유상범 • 윤창현 • 이양수

이주환 · 정경희 · 황보승희

의원(2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, 구급대, 구급차, 공항, 객차, 선박 및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에 누락되어 있어 이들을 설치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며,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갖추어진 시설에도 안내가 부족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이를 적절히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시설에

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, 한편 국가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토록 하며, 여러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 표지판을 부착토록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의2제1항·제4항 및 제62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이 경우 국가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- 6의2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지정·승인 등을 거쳐 관리·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
-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 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.

제6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"제1항에"를 "제1항 및 제2항에"로 한다.

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

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제47조의2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다 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 ① --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・점유 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 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 다. <후단 신설> 경우 국가는 소유자・점유자 또 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 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1. ~ 6. (생 략) 1. ~ 6. (현행과 같음) <신 설> 6의2. 「관광진흥법」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지정・승인 등을 거쳐 관리・운영 중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. (생략) 7. (현행과 같음) ② • ③ (생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 략) <신 설>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 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 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

④ (생 략) 제62조(과태료) 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
당 시설 등의 출입구 또는 여
러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사
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
하여야 한다.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62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
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
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
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
 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
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